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11호

포커스

한 · 미의 노후빈곤과 연금정책 평가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매우 중요시됨

-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니면서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검토하고자 함

■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급속히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낮아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상태임

- 한국 고령자의 낮은 소득으로 노인빈곤율(2013년)은 한국 49.6%로 미국 21.5%에 비해 28.1%p 높음

■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수준이 낮고, 사적연금의 격차는 더욱 큼

-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가입률이 낮은 편이며,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수급자가 적고 소득보장 수준도 미국에 비해 낮음
-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이로 인해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Pension fund) 비중 또한 매우 낮음

■ 미국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로 추진됨

-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급여를 줄이고 보험료를 증가시켜옴
- 미국의 사적연금 개혁은 연금상품 다양화, 세제혜택 강화, 연금지급보장 등을 통해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연금정책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재정문제 및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퇴직 직전 세대(예, 50대)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인센티브를 주는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DB형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DC형 및 IRP에 대해 예금 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화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1]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매우 중요시됨

- 이러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과거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후빈곤 등 고령사회에 닥칠 문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공·사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2])이 낮고,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3]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여서 연금정책 문제가 최대 현안 과제가 될 전망임

■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4]를 지니면서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5]

- 미국은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 비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유럽에 비해 노인빈곤 문제는 다소 취약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본고에서는 한국과 미국 고령자의 노후빈곤 및 공·사연금 실태, 미국의 공·사연금 개혁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과 미국의 노후빈곤 실태를 살펴본 후 노후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공·사연금의 실태를 비교·검토함
- 특히, 공·사연금의 실태는 과거 공·사연금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금개혁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1) UN분류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율(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임
2) 자신의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
3) 65세 이상 노인 중 빈곤노인의 비율(2013년 기준 49.6%).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 이하인 사람이 빈곤자로 정의됨
4) 미국의 공적연금은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하며, 법정 소득대체율 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5) 본고는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류건식·이상우, 2017)의 후속 연구로 추진됨

2. 한국과 미국 고령자의 노후빈곤

■ 한국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미국 고령자의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편임.

- 한국과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고령자)의 소득을 비교하면, 한국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의 60.1% 수준으로, 미국 92.1% 수준에 비해 32.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한국과 미국 고령자의 상대소득[1] 비교(2013년)

(단위: %)

구분	65세 이상 전체	66-75세	75세 이상
한국	60.1	62.0	56.4
미국	92.1	102.9	76.8

주: 1) 전체 인구 소득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참고하여 정리

■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한국 49.6%로 미국 21.5%에 비해 28.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두 국가 모두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인 12.6%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노인빈곤 문제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14.6% 수준임에 반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점에서 노인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표 2〉 한국과 미국의 노인빈곤율 비교(2013년)

구분	고령자(65세 이상)			전체 인구
	전체	66~75세	76세 이상	
한국	49.6%	46.1%	-	14.6%
미국	21.5%	17.5%	27.2%	17.6%
OECD	12.6%	11.2%	14.7%	11.4%

주: 한국, 미국은 2013년 기준, OECD는 2012년 혹은 입수 가능한 최신연도 기준임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p. 171; http://dx.doi.org/10.1787/888933301209

■ 노후빈곤을 대처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복지지출과 공적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노인 복지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됨[6]

6) OECD(2014), OECD-Society At a Glance 2014.

-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중(2014년)을 살펴보면, 한국은 10.4%로 미국 19.2%, OECD 평균 21.6%에 비해 상당히 낮음[7)]
- 특히, 우리나라는 2016~2020년 동안 공적연금[8)]과 기초연금 지급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7.4%, 5.2%로 예상되나,[9)]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10)]로 노인빈곤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편임
- 이를 통해 볼 때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만이 아니라 공 · 사적 연금을 동시에 검토한 후 연금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3. 한 · 미의 공 · 사연금 실태

공적연금 가입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적연금 보험료가 적고 가입률도 낮은 편임

-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한국(국민연금)이 9%로 미국(OASDI) 12.4%에 비해 3.4%p 낮고, 공적연금 가입률도 한국이 78.2%(2017년)로 미국 94.0%(2013년)에 비해 15.8%p 낮은 상황임

〈표 3〉 한국과 미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률

연도	한국	미국	OECD
보험료율	9%	12.4%	19.6%
공적연금 가입률(경제활동인구 대비)	78.2%(2017년)[1)]	94.0%(2013년)[2)]	–

주: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표통계 3월 통계 21,759천 명(가입자),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14), 2017년 5월 고용동향 에서 경제활동인구 27,828천 명을 활용하여 산출
2)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5.jsp) 외국연금제도의 미국편 참고
3) 보험료율은 법정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공적연금 대상소득(기준소득월액)을 곱하여 보험료(기여액)가 산출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7) 이를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산출한 결과 두 국가 모두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령부문으로 국한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미국은 19위, 한국은 30위로 낮은 노인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됨(한정수(2015),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
8)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을 모두 포함
9)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10)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상임. 2003년~2013년 동안 65세 고령자 남녀 모두 기대여명이 각각 2.9년, 3.4년 늘어남(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2015 고령자 통계)

공적연금 급여 측면을 비교하면, 한국은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11] 수급자가 적고 소득보장 수준도 미국[12]에 비해 낮으나, 제도 자체의 급여수준은 미국보다 적은 편은 아님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성숙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률(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7.8%로 미국의 89%에 비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한국, 미국 각각 2.2%, 6.7%)도 작음
- 이로 인해 현세대 노인의 실현된 소득대체율은 18.6%(2017년 3월)로 미국의 4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그러나,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납부예외자, 체납자 등)가 없고 제도성숙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13]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미국 OASDI보다 급여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표 4〉 한국과 미국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급여수준 비교

구분		한국(국민연금)	미국(OASDI)	OECD(34개국)
수급률(65세 이상 인구 대비)		37.8%(2015년)[1]	89%(2012년)[2]	–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2014년)		2.2%	6.7%	7.9%
연금 소득대체율	OECD 모형에 의한 산출[3]	39.3%	35.2%	52.7%
	실현된 소득대체율	18.6% (2017년 3월)[4]	2012년 기준 월 평균 $1,262(단신 기준, 소득대체율 약 40%)[2]	–

주: 1) 65세 이상 인구(2015) 6,545천 명, 65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2015) 2,474천 명
2)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5.jsp) 외국연금제도의 미국 편 참고
3) 가처분소득을 분모로 하여 산출된 순연금소득대체율임
4) 2017년 3월 평균연금액 37만 2천 원, A값(근로자 3년 평균소득)은 약 200만 원으로 산출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국민연금공단(2017. 3), 『국민연금 공표통계(안)』를 참고하여 정리

사적연금 측면에서 보면, 한국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임

-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3.9%로 미국 41.6%에 비해 27.7%p 낮고, 두 국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큰 차이가 없음

11) 일반적으로 제도 시행 후 40년(최초 입직연령이 20세인 가입자가 60세에 퇴직하는 기간) 정도는 되어야 성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전국민시행은 1999년) 도입으로 29년(전국민시행 기준 18년) 동안 시행되어 대부분 납부자이고 수급자 수는 적음
12)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사회보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급여 수급 노인의 비중(대략 90%)이 사회보장 적용 근로자의 비중과 유사),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5.jsp) 참조
13)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표 5〉 한국과 미국의 사적연금 가입율(2011년)

(단위: %)

국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계
한국	13.9	23.4	–
미국	41.6	22.0	47.1

주: 1) 가입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가입자 수의 비율로 산출함
2) ( )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단순 합산 비율임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 사적연금 제도의 미성숙[14]과 앞에서 살펴본 가입률 등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비해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Pension fund)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2014년)은 미국에 비해 75.7%p 낮고, OECD (34개국) 평균인 37.2%에 비해서도 29.9%p 낮은 것으로 나타남[15]
- 낮은 사적연금자산은 낮은 급여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6〉 한국과 미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 추이

(단위: %)

국가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한국	1.5	2.6	2.8	3.7	4.9	7.3
미국	73.3	76.5	59.1	73.8	73.8	83.0
OECD(34개국)	28.4	31.1	27.3	32.3	33.4	37.2

주: 1) OECD(34개국) 평균은 국가별 비중을 단순 평균함
자료: OECD(2015), Pension Markets in Focus, p. 30(Table A.3) 참조

■ 이러한 공·사연금의 가입, 수급 및 적립금 규모는 과거 공·사연금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금개혁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4) 우리나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적격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제도가 미성숙 단계로 볼 수 있음
15) 반면 한국 공적연금의 GDP 대비 적립 비중(2013년)은 29.9%로, 미국 16.5%, OECD 평균 19.7%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OECD(2015), pension at a glance) 선진국에 비해 공·사적 연기금의 불균형이 우려됨

4. 미국의 공·사연금 개혁[16] 내용과 특징

가. 공적연금 개혁

■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1982년 사회보장기금이 1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본격화됨[17]

- 1983년 사회보장개혁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Social Security Reform)는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를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함
  -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세를 5.4%에서 5.7%로 늘리고, 연금수령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62세)도 완전노령연금의 80%에서 70%로 삭감함

■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점진적[18] 개혁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개혁으로 추진됨[19]

- 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공적연금의 민간시장 활용 확대, 사회보장세 일정 부분을 DC형 개인계좌로 운영[20] 등 공적연금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함
-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논의가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공적연금 민영화 논쟁은 있었으나 민영화로의 전환은 추진되지 못함[21]

■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의 특징은 재정안정화[22]를 위해 점진적으로 급여를 줄이고 보험료를 증가시켜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6)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 변화는 한 · 일 간의 고령화 속도, 연금체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일대일 비교하지 않고 일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논리 전개상 일관성이 존재함
17) 국민연금연구원(2012), 『해외 공 · 사연금제도: 미국편』 참조
18) 연금제도의 기본 특성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상향, 급여수준 축소,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제도를 변경해 가는 것을 의미함
19)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5.jsp) 외국연금제도의 미국편 참고
20) 사회보장개혁위원회에서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1.5%의 사회보장세를 개인은퇴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선택 사항을 추진하는 방안이 권고된 바 있으나 채택되지는 못함
21) https://en.m.wikipedia.org/wiki/Social_Security_debate_in_the_United_States
22) 미국 공적연금(OASDI)의 기금소진 연도는 2033년으로 추정됨(김헌수(2014),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의 내용과 의미」, 『연금이슈 & 동향분석』, 국민연금연구원)

나. 사적연금 개혁

■ (퇴직연금 다양화) 미국 퇴직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입하지만, 긴 제도운영[23] 기간에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함

- IRA는 전통형 IRA[24], Roth IRA[25],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26], 교육 IRA, Self-Directed IRA[27] 등 다양한 IRA를 공급하고 있음[28]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한 이익분배제도[29], 종업원지주제도[30], 401k, 403k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퇴직연금의 가입 선택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연금세제혜택 확대) 기본적인 사적연금 세제혜택 외에 은퇴 직전 세대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31]를 도입함

-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연간 16,500달러(1천 9백만 원)를 소득공제함(류건식, 2013)
- 한편, 미국은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 연간 $6,500(401k에 $5,500, IRA에 $1,000)의 추가적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연금지급보장 강화) 연금지급보증제도 운영, 예금자 보호 한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됨

- DB형의 경우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를 설립하여 법적으로 연금지급을 보증함
- DC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여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23) 1875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사가 확정기여형 연금을 최초로 도입
24) 보험료(contribution)는 소득공제 되며, 운용수익에 과세이연하고 인출 시 연금급여는 과세됨
25) 보험료(contribution)는 소득공제 되지 않으나 인출액은 비과세됨
26) 소규모 자영업자가 IRA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계좌
27) 예금주가 노후 대비 자산마련을 위한 투자(자산 유형, 거래유형 등에 제한)할 수 있는 계좌
28) 2012년 5월 기준으로 총 IRA 가입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40.4%(4,890만 가구) 수준임(현대경제연구원, 2014)
29)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영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제도
30) 종업원에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31) 2002년부터 시행됨(http://www.money-zine.com/financial-planning/retirement/401k-contribution-and-catch-up-limits/)

■ 미국의 사적연금 개혁의 특징은 연금상품 다양화, 세제혜택 강화, 연금지급보장 등을 통해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시사점

■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 미국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공·사 간 역할분담이 어느 국가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가 있고 연금체계 또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금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재정문제 및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2060년에 기금 소진의 우려가 있고, 최근 고령화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불안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 등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체납자, 납부예외자 규모가 450만 명 수준이고 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제도 내실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IRP 가입 확대[32]를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다양한 IRP 상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 의무화[33]의 조속한 시행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셋째,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퇴직 직전 세대(예, 50대)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인센티브를 주는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32) 2017년 7월 말부터 자영업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자에 대한 IRP 가입이 허용될 예정임
33) 2014년 사적연금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의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

- 예를 들어,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 금액(연간 700만 원[34])에 대해 50세보다 연령이 높으면 보다 많은 대상금액(예, 연간 1,0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세액공제율이 12%(5,500만 원 이하 15%)인 것을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예, 15%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넷째, DB형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DC형 및 IRP에 대해 예금 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DB형 퇴적연금에 대한 원칙론적인 지급보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보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35]
-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할 때 보장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kiri

34)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 한도)과 IRP 납부액을 합한 금액
35) 동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원칙적 내용만 있음